

평창군공공발간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1. 회 부 경 위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8. 12. 21 . 평창군수(기획실장)
- 나. 회부일자 : 1998. 12 . 29 .
- 다. 상정일자 : 1998. 12. 29. 제62회평창군의회(정기회)
제2차 본회의

2. 제 안 이 유

- 공공발간물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가 주민의 공익성을 우선 하여야 하나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광고료보다 상대적으로 비싸 사용료를 세분화하고 이를 현실에 부합하게 개정하려는 것임.

3. 주 요 내 용

- 가. 내고장 소식지 광고요금의 부과기준인 규격 조정 및 세분화
 - 규격조정 : 5단계 ⇒ 13단계
 - 사용요금 : 기존 사용료의 1/10
- 나. 내고장소식지 줄(LINE) 광고요금 신설
 - 4개분야(생활용품, 영업안내, 부동산, 구인·구직)로 구분
 - 사용요금 : 기타 생활정보지의 1/3

4. 검토 의견

- 가. 본 조례안은 평창군 신규개발 시책관리 지침에 의거 상업적으로 광고이용을 위한 자치단체 경영전략화 사업을 위하여 '98. 4 .21일자로 제정된 것으로서
- 나. 제정시 공공발간물 광고표시에 따른 광고료가 일반 사익 발간물 보다 높이 책정되어 사용자가 극히 적고, 수익이 없자 현실에 맞게 광고료를 하향 조정 하고, 부과기준인 규격별 사용료를 세분화 하고자 하는 것임.
- 다. 기타 자구 및 내용에는 별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원안 가결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